

---

#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아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AJOU UNIVERSITY | Law School

# ▶ 目 次 ◀

I. 입학전형일정.....	01
II.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02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3. 전형방법	
4.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5. 등점자 처리기준	
III. 유의사항.....	06
1. 지원자 유의사항	
2.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IV. 입학원서 접수안내.....	08
1.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사항	
2. 지원관계서류 제출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V. 제출서류.....	09
VI. 합격자 발표/등록 및 이의신청.....	10
1. 합격자 발표	
2. 합격자 등록	
3. 불합격자 이의신청	
4. 기타 유의사항	

**I**
**입학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4.10.6(월) 09:00 ~ 10.10(금) 18: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li> <li>유웨이(<a href="http://www.uway.com">www.uway.com</a>)</li> </ul>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지원관계서류 제출		2014.10.6(월) 10:00 ~ 10.15(수) 18:00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종합관 615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10월 15일 도착분에 한함
1단계 가군·나군 합격자 발표		2014.10.31(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별도 개별통지 없음
면접 전형	가군	2014.11. 3.(월)~11.16(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구체적 장소/일시는 1단계 합격자발표시 개별조회
	나군	2014.11.17.(월)~11.30(일)		
합격자 발표		2014.12.8.(월)~12.12(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별도 개별통지 없음
합격자 등록		2015.1.5(월) ~ 1.6(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추후 안내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5.1.7(수) ~ 1.9(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통지함
1차 추가 합격자 등록		2015.1.12(월) ~ 1.13(화)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추후 안내	
미등록자 발생 시 추가합격자 발표		2015.1.14(수) ~2.27(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lawschool.ajou.ac.kr">http://lawschool.ajou.ac.kr</a> )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개별통지함
이중등록자 등록포기각서 제출 마감		2015.1.30(금) 17:00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종합관 308호)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2015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		2015.2.28(토)		2015학년도 학생선발 완료

## II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모집군	모집인원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 50명	가군	28명	2명	30명	각 군별 비법학사 1/30이상, 타 대학 1/30이상 선발
	나군	19명	1명	20명	

- 지원자는 가·나군 모두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지원하여야 함

#### \* 정원 외 선발로 총 모집인원이 증가될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근거

2015학년도 '정원 외 인원'의 선발은 2014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선발함

단,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 2. 지원 자격

#### 1) 공통사항

- 2015년 2월 28일 기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4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4.10.10)이전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지원관계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

## 2) 특별전형

대 상	지원 자격
경제적 취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차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수급권자
신체적 취약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장애가 있는 자)
사회적 취약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7.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만 5년 이상이며, 그 기간이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는 자
	8. 소년소녀가장의 상태로 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1조(간병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속하는 자에 한함

■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별첨1】 및 【별첨2】 참조

※ 특별전형 합격자는 3년 전액 장학대상의 자격이 부여됨. 단 신체적 취약자의 경우 장학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 3. 전형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구분	법학적성시험 (LEET)	학부성적	영어성적	면접		비고
				서면평가	대면평가	
1단계	30%	20%	20%	-		1단계 7배수
2단계	1단계 성적(70%)			15% (리트논술포함)	15%	

## 4.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1) 법학적성시험

$$\left\{ \left( \frac{\text{언어표준} + \text{추리표준}}{2} \times 0.8 \right) + \left( \frac{\text{언어백분위} + \text{추리백분위}}{2} \times 0.2 \right) \right\} \times \frac{25}{100} + 5$$

### 2) 학부성적 : 백분위 환산점수 × 반영비율(20%) × 0.5 + 10(기본점수)

- ※ 학위가 복수인 경우는 모든 성적을 평균하여 반영함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일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함
- ※ 6년제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졸업자는 본과 전(준)학년 성적만 반영함

### 3) 영어성적

-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TOEIC, TEPS)의 성적을 환산기준에 따라 각 전형별 영어성적 반영비율로 반영함(영어성적 = 성적반영점수 × 영어성적 반영비율)

<환산기준>

등급	TOEFL		TOEIC	TEPS	성적반영점수
	CBT	IBT			
1	250~300	105~120	900~990	766~990	100
2	245~249	101~104	875~899	730~765	98
3	240~244	99~100	850~874	700~729	96
4	235~239	94~98	825~849	663~699	94
5	229~234	91~93	800~824	637~662	92
6	224~228	88~90	775~799	615~636	90
7	219~223	85~87	750~774	594~614	88
8	213~218	82~84	725~749	573~593	85
9	208~212	79~81	700~724	555~572	82
10	204~207	77~78	675~699	538~554	79
11	200~203	74~76	650~674	520~537	76
12	193~199	71~73	625~649	501~519	73
13	163~192	68~70	600~624	482~500	70

- ※ 13등급을 하회하는 성적을 취득한 지원자의 영어성적 환산기준은 전체 지원자의 영어성적 분포도를 감안하여 입시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4) 면접전형

서면평가	대면평가	합계
50%	50%	100%

##### 가. 서면평가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논술, 경력, 자격증, 사회봉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나. 대면평가

면접방법	평가영역	세부 평가비율
대면평가	가치관	10%
	인성	10%
	잠재력	10%
	열정	10%
	사고력	20%
	표현력	20%
	의사소통능력(논증력)	20%

※ 면접(대면평가)시 법학지식은 묻지 않습니다.

※ 면접(대면평가) 결시자는 다른 전형요소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5. 동점자 처리기준

##### 1) 1단계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함

##### 2)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면접시험성적 상위자
- 2순위) 법학적성시험 상위자
- 3순위) 외국어성적 상위자
- 4순위) 학사학위과정 성적 상위자

## 1. 지원자 유의사항

### 1) 이중등록자의 등록포기각서 제출 마감일시 : 2015.1.30(금) 17:00까지

- 이미 등록한 자가 타교에 합격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본 대학원 교학팀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각서는 늦어도 2015.1.30(금) 17:00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선발비율 유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근거  
법학 외 타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으며,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비법학사 또는 법학사 분야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근거  
타대학 출신 지원자란 원칙적으로 아주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대학출신 지원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3) 입학전형 필수요소 위·변조자에 대한 조치사항

-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 성적)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LEET)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2.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의무로 하며, 추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중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학원서에 기재한 일체의 사항은 입학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전형요소의 성적 반영은 지원자가 제출한 원본 증빙서류에 근거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며, 지원자는 본 대학원에서 법학적 성시험(LEET) 성적, 백분위의 확인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고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성적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백분위환산점수를 기재한 후 성적증명서 발급 기관(학사관리팀, 교무지원팀)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학지원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 대학졸업증명서를 2015.3.4.(수) 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관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전형유형(일반전형, 특별전형)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사진파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은 수험생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기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동일 반명함판(3×4cm) 사진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입력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하며, 전형료 결제는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입학원서(출력본)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로 처리하고, 제출서류의 일부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 학과(전공), 성적을 기재하는란에 모든 전적대학(학과)과 성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입학전형기간 및 등록기간 중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합니다.

### 1.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사항

- 접수기간 : 2014.10.6(월) 09:00 ~ 2014.10.10(금) 18:00까지
- 접수처 :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ajou.ac.kr>) 배너 링크 또는  
유웨이 홈페이지(<http://www.uway.com>)

### 2. 지원관계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4.10.6(월) 10:00 ~ 2014.10.15(수) 18:00까지
- 제출처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308호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입학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제출처로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2014.10.15(수)까지 도착하도록 등기우편  
으로 발송(제출시 유웨이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라벨을 봉투 앞면에 부착)

**V**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입학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li> </ul>
2	자기소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li> <li>(최종 작성한 파일은 지원 관계 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여야 함)</li> </ul>
3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졸업증명서</li> <li>■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li> <li>■ 복수학위(복수전공 포함)취득자는 각 학위과정의 모든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외국대학 출신자는 학력조회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함</li> <li>(학력조회 자료 양식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li> <li>■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최종학력 증명은 '中國高等教育學歷調查報告' 를 첨부하여야 함(www.chsi.com.cn)</li> </ul>
4	학사학위과정(대학)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평균평점을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li> <li>■ 복수학위(복수전공 포함)취득자는 각 학위과정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외국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li> </ul>
5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원본</li> </ul>
6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 TOEIC, TEPS의 성적표 원본(최근 2년 이내)</li> </ul>
7	경력·실적·자격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li> </ul>
8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입증하는 제 증명서</li> </ul>

## VI 합격자 발표/등록 및 이의신청

### 1. 합격자 발표

- 2014. 12. 8(월)~12.12(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ajou.ac.kr>)
- 합격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없습니다.
- 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2. 합격자 등록

- 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1차 추가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2015.1.6(화)** 이후부터 결원 인원 확정일인 **2015.2.28(토)** 사이에는 등록포기자가 발생하는 대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연락으로 이루어지며, 본인 확인을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의 등록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는 일정에 맞추어 공지합니다.
- 이미 등록한 자가 타교에 합격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반드시 본 대학원 교학팀에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불합격자 이의신청

- 입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시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본 대학 및 본 대학원 관련규정과 학칙, 사정원칙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 4. 기타 유의사항

-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병으로 인한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입학 후 교과과정 이수 및 제반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 '가' 군 또는 '나' 군)에 속하는 타 법전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행위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별첨1】 특별전형 지원자격 입증서류 제출 안내

### ※ 특별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 1) 특별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자기확인서
- 2) 서류 발급기간 준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필수)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3) 특별전형 대상 중 3~9호의 경우는 지원자 본인에만 해당됨
- 4) 특별전형 대상 중 5~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의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1월~9월)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건강보험료	30,209	51,437	66,542	81,647	96,751	111,856	126,961

### ◎경제적 취약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

- 제출서류

##### 1)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기확인서 【별첨3】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 3년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최근 3년간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종합소득세납부내역-최근 3년간
- 일반 대상자: 【별첨2】 참조, 자기확인서 【별첨3】,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 3년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최근 3년간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종합소득세납부내역-최근 3년간

###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수급권자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명서(본인 기준) 원본

## ◎신체적 취약자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6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사회적 취약자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3년간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3년간

### 7.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만5년 이상 이며, 그 기간이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는 자

- 제출서류 : 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서,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3년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최근 3년간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종합소득세납부내역-최근 3년간

### 8. 소년소녀가장의 상태로 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제출서류 : (부모가 포함된) 제적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3년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최근 3년간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종합소득세납부내역-최근 3년간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애급여), 제61조(간병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금)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

■ 제출서류 : 해당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3년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최근 3년간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종합소득세납부내역-최근 3년간

## 【별첨2】 복지급여 비수급자 지원자격

### ①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의 2012, 2013, 2014년도 3개년간의 **합산한 재산세 평균 납부액이 150,000원 이하**여야 함

### ②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 만 3년(2011.10월~2014.9월)의 각 평균 납부액이 아래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1) 2011년도의 심사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5,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1,971,995
소득인정액(A×1.2)	693,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보험료(A×1.2×0.0282)	18,023	30,687	39,698	48,710	57,721	66,732	75,74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1월~12월의 지원자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의 구성원수(가구원수)로 판단함

#### 2) 2012년도의 심사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소득인정액(A×1.2)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보험료(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 6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6인 가구: 2,048,904원)

▶ 2012.1월~12월의 지원자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의 구성원수(가구원수)로 판단함

#### 3) 2013년도의 심사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소득인정액(A×1.2)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보험료(A×1.2×0.02945)	20,220	34,429	44,540	54,650	64,760	74,870	84,98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2013.1월~12월의 지원자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의 구성원수(가구원수)로 판단함

#### 4) 2014년도의 심사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4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 2014.1월~9월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각 구성원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구성원수(가구원수)의 합산으로 판단함





(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증에는 3인 가구(아버지, 본인, 배우자)만 기재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어머니를 포함한 3인 가구의 동생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다면 2014년도 건강보험료 심사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각 구성원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구성원수(가구원수)의 합산인 6인가구로 판단 함

### 【별첨3】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을 위한 <h2 style="text-align: center;">자 기 확 인 서</h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고등학교	(     ) 고등학교 (     ) 학교 고등부    년    월 졸업(예정) (     )년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대학교	(     ) 대학교            년    월 졸업(예정)		
연락처	주 소	□□□ - □□□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
지원 모집단위			
<b>확 인 내 용</b>			
※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 본인이 지원하는 특별전형(경제적 취약자, 신체적 취약자, 사회적 취약자) 지원자격에 합당하다는 내용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 명) 보호자 _____ (서 명)			
<b>아주대학교 총장 귀하</b>			

## 【별첨4】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십시오.  
(작성 시 굴림체, 글자크기 10으로 작성)
2. 자기소개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작성하십시오.  
(항목별 공백을 제외 순수 글자수 500자 이내)
3.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해당 항목별 제한 글자수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항목별 공백을 제외 순수 글자수 500자 이내)
4. 경력사항~사회봉사활동은 기재란 부족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십시오.
5. 자기소개서는 작성 후 출력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십시오.  
(최종 작성한 파일은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 하여야 함)
6.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수험번호		전형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의 가치관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십시오.(500자 이내)

2. 자기계발을 위한 과거·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목표 및 Vision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500자 이내)

3. 사회·봉사·동아리·해외연수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을 기술하십시오.  
(500자 이내)

4.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500자 이내)

경력사항(군 경력, 대학원 경력 기재불가)		
직장명	재직기간	근무년월
	~	년      개월
	~	년      개월

제2외국어 능력(한자 자격증 기재불가)		
시험명	취득성적	취득일자

자격증		
시험명	취득점수/급수	취득일자

논문/특허/수상경력 등		
주제	주관기관	년/월/일

사회봉사활동		
단체명	봉사기간	봉사시간

2014년      월      일

지원자 \_\_\_\_\_ 자필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